

보상협의 공고문

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18 - 097호

우리 사무소 시행 『국도36호선 하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으로 협의할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을 시행령 제8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합니다.

1. 사업시행자 : 보은국토관리사무소
2. 사업의 명칭 : 국도37호선 하판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
3. 공고사유 :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인함.
4. 협의기간 : 1차 2019.5.13. ~ 2019.6.13. 2차 2019.6.18. ~ 2019.6.28. 3차 2019.6.28. ~ 2019.7.
5.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: 국가에서 공인한 2인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국유이전 등기서류 제출시 보상
6.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
 - 가. 기 간 : 1차 2019.5.13. ~ 2019.6.13.(32일), 2차 2019.6.18. ~ 2019. 6.28(10일), 3차 2019.6.28. ~ 2019.7.10(12일)
 - 나. 장 소 :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(☎043-540-2319)
7.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
 - 가. 토지대금 청구서 2통(우리사무소 소정양식)
 - 나. 등기촉탁승락서 2통(우리사무소 소정양식)
 - 다. 공공용지취득협의서 2통(우리사무소 소정양식)
 - 라. 위임장 1통(우리사무소 소정양식)
 - 마. 인감증명서 2통(부동산 매수자 란에 국(국토교통부)기재된 것에 한함)
 - 바. 주민등록초본 2통
8. 토지 등의 표시 : 붙임 토지세목조서 참조
9. 기타 문의사항 :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(☎043-540-2319)

2019. 07. .

보은국토관리사무소

